

호로 한다.

- 1. 국고보조금
- 2.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대한축구협회 등 관련기관의 분담금
- 3. 일반회계 전입금
- 4. 지방채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 5. 주경기장 부대시설의 대부 및 운영수입금
- 6. 기타 수입금

제6조(세출) 건설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로 한다.

- 1. 주경기장 및 그 부대시설의 건설비
- 2. 제1호에 수반되는 유지관리비와 기타 부대 경비
- 3. 예탁금, 차입금 및 지방채 자금의 원리금 상환
- 4.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장 기간시설확충사업계정

제7조(세입) 기간시설확충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로 한다.

- 1. 국고보조금
- 2. 일반회계 전입금
- 3. 기타 수입금

제8조(세출) 기간시설확충사업계정의 세출은 기간시설 확충사업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2호라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호마목을 삭제한다.

(4)정비공장(자동차종합정비공장을 제외한다.)

제23조제11호바목중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정비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자동차종합정비공장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30퍼센트이상"을 "1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조례 제21조제1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된 자동차정비공장은 이 조례 제21조제12호라목(4)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서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8. 10  
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8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1998년 10월 2일

다. 상정일자

○제10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1998. 10. 1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교통관리실장 차동득)

가. 제안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고,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변경하여 내실있는 심의를 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위원장이 행정제1부시장에서 위원 중 호선

○분과위원회 명칭은 소위원회로 개칭하고자 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태호)

○본 조례의 제정 배경

'97. 7월에 발표한 " 시내버스개혁종합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문성, 효율성 및 시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버스정책시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며

주요기능은

- 시내버스정책방향 설정

- 노선 및 요금조정
- 보조금 등의 지원기준과 방법
- 시내버스운영체계 조정 및 서비스평가와 감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임.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하며

- 교통전문가
- 시민단체 대표
-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 시의회의원
- 버스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대표
- 중앙부처, 경찰 등 유관기관 대표 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음.

○개정안 제3조

“위원장은 행정제1부시장으로 하고”를 “위원 중 호선”토록 개정하고자 함.

'98. 8. 25.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개정에 따라 교통업무가 제1부시장에서 제2부시장으로 이관되었고, 위원장을 행정제2부시장에 당연직으로 할 경우 집행부의 의도대로 위원회가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원 중 호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개정안 제6조

“바스정책, 서비스개선, 경영합리화 등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에서 분과위원회 명칭을 “소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함.

일반적으로 회의체에서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분과위원회  
심사의 번잡을 피하고 회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며, 분과위원회는 전 위원을 분과로 나누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의 수에 관계없이 위원을 반드시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속하게 되는 것임.

- 소위원회  
특정사안을 더욱 세밀히 심사하기 위하여 특정 소수인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내부기관이며, 소위원회 활동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되며 소위원회의 구성, 권한, 폐지, 활동시한 등은 위원회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그러므로 분과위원회로 할 경우 전위원이 소속감을 갖게 되는 장점은 있으나 특정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분과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소위원회로 할 경우에는 특정사안이 발생할 때 순발력있게 구성하고 폐지할 수 있는 반면, 소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만이 소속감을 갖게 되고 나머지 위원은 활동을 포기하고 거수기 노릇에 빠질 위험이 있음. 따라서 명칭변경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함.

한편, 개정안대로 할 경우에도 개정안 제6조제2항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다음에 “및 소위원장”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고,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및 분과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위원회에서 모든 사안은 의결로서 확정되는 것이며 따로 위원장이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개정안 제7조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를 삭제하고자 하나, 개정안대로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개칭하더라도 소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주체가 있어야 하므로 현행조례 제7조 제3항은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위원장이 소집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4. 질의답변

○생략

5. 수정안 요지

- (수정동의안 제안자 : 윤여형의원 외 1명)
- 조례안 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하고”로 하고,
- 조례 제4조제1항 중 “2년”을 “1년”으로 하며
-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는 현행조례대로 하고
- 조례 제8조제4호를 신설하여 “위원의 신